

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

❖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

□ 관련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3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
□ 시행년도 : 2009년도

□ 추진계획

- 사업기간 : 2026. 1. 1. ~ 12. 31.
-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인 중 '19. 7. 1. 이전 1급 장애인

- 제외대상

- 시설수급자, 국가유공자·보훈보상대상자
-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

○ 2026년도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계	제주시	서귀포시	비고
229,400	170,000	59,400	

○ 지원기준 : 1인 월 30,000원

☞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

○ 지원방법 :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(매월 2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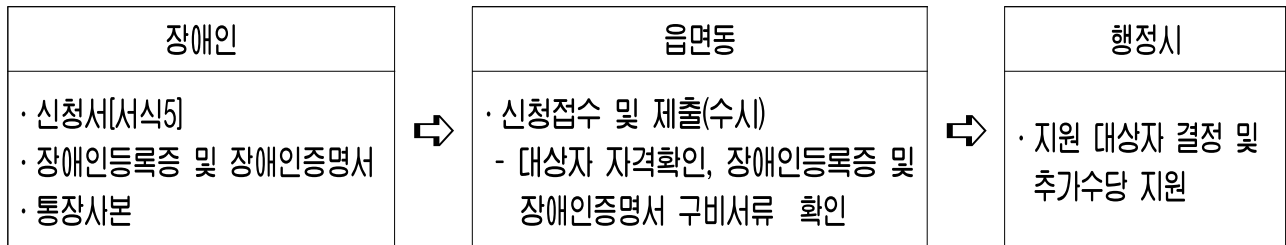
○ 지원시기

- 급여개시일 : 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급
- 급여중지일 : 추가수당 수급기간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제외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

□ 지급절차

○ 신청기간 : 수시

○ 진행절차



○ 유의사항

- ①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 불가
- ② 추가 수당의 횡령,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
- ③ 다만,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에 한하여 배우자, 직계 혈족,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가능
- ④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『장애인연금 사업안내』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기준을 적용
- ⑤ 신청서 제출대상에 한하여 지원자격 적격여부 검토 및 지원 (신청주의)